

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이영아 의원

발의일 : 2021. 11.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- 나.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다.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3조)
- 라.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~제17조)
- 마.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
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